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일

산업통상부장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예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산업 R&D 혁신방안」('26.1.28) 이행 지원을 위해 지역 지원 확대, M.AX 얼라이언스,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도화
- 경제안보 강화, 시장성과 창출,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 조성 강화 방안 마련 및 규정 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 ① (스타 엔지니어 트랙) ‘스타 엔지니어 트랙’ 제도 신설에 따른 최종 평가 면제 근거 마련(제39조제8항)
- ② (안전관리) 안전관리형 과제의 평가단에 안전전문가 참여근거 신설(제6조제2항제1호바목)
- ③ (부채비율 완화) 벤처투자·신기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민간 정책성 투자금도 부채비율 산정 시 부채에서 제외하고, 자본잠식 산정 시 자본으로 인정하여 민간투자를 유치한 기업 지원 확대 유도(별표2)

- ④ (혁신도전형 과제 유연화) ‘혁신도전 연구관리계획서’ 제도 도입을 통한 연구목표와 연구경로 유연한 조정 등 혁신도전형 과제 관리체계 정비(제28조제11항, 제36조제9항, 제38조제24항, 제39조제13항)
- ⑤ (대형선도과제 추진절차 개선) 서로 다른 세부사업 내 과제를 하나의 통합형 과제로 기획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형선도과제 관련 절차를 개선(별표1)
- ⑥ (채무불이행 검토대상 완화) 외부감사를 통해 재무건전성이 검증된 상장기업의 경우 기관장 체납 및 채무불이행 여부 조사 대상에서 제외(별표2)
- ⑦ (평가등급 폐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여 기존의 목표달성률 중심의 평가 등급제를 폐지하고 제재 처분 대상이 되는 불성실 과제만 판정하여 ‘완료/미완료’ 2단계로 구분(제38조, 제39조, 제41조)
- ⑧ (기타 오기, 자구수정 등 조문 정비) 규정 내 용어 통일, 오기 수정 및 의미 명확화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ii032740@korea.kr

2)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정책과

3) 팩스 : 044-203-474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정책과(전화 : 044-203-45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tir.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이 지침은 공통운영요령 제3조에 의한 사업 중 산업, 에너지·자원, 미래 유망기술, 상용화기술 등의 개발을 목적으로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이하 “장관”) 이 추진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등) ① ----- ----- ----- ----- 산 <u>업통상부장관</u>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8. (생략)	1. ~ 38. (현행과 같음)
39. “조기종료”라 함은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최종목표를 최종년도 이전에 달성하는 경우 또는 해당 단계 목표를 달성한 경우를 말한다.	39. <삭제>
40. ~ 44. (생략)	40. ~ 44. (현행과 같음)
45. “투자금상환금지기간”이라 함은 투자계약체결일로부터 다음 중 먼저 도래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45. ----- ----- -----.
가. ~ 나. (생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u>조기종료</u> 로 평가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 <u>완료</u> 로 ----- -----
라. <u>중단 또는 불성실수행</u> 으로 평	라. <u>미완료</u> 로 -----

현행	개정안
가된 날	-----
제5조(연구개발과제기획단) ① (생략)	제5조(연구개발과제기획단) ① (현행과 같음)
②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은 <u>산업통상자원부</u> (소속기관 포함) 공무원 및 특허/경제성/안전/표준 전문가 등을 포함한 산·학·연 전문가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u>산업통상부</u> ----- ----- -----.
제6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 등) ① (생략)	제6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한다. 단,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한 경우 해당 기준에 따른다.	② ----- ----- --. ----- ----- -----.
1. 공통운영요령 제7조에 따라 평가대상 분과(동시에 평가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묶음) 내 연구개발과제의 기술 중분류 중 하나와 50% 이상 일치하도록 7명 내외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과제별 또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을 추가로 구성 가능하고, 필요시 다음의 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1. ----- ----- ----- ----- ----- ----- ----- -----.
가. ~ 마. (생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u><신 설></u> 2. ~ 7. (생략) ③·④ (생략) 제20조(민간의 투자유치가 있는 사업의 투자심사) ① ~ ③ (생략) ④ 투자기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계약서 사본과 확약서를 제출한 신청기관을 투자적격대상으로 선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투자심사대상이 투자기관협의회 회원 또는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이 인정하는 투자주체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가. ~ 바. (생략) 2.·3. (생략) ⑤ (생략) 제28조(협약의 준비) ① ~ ⑩ (생략) <u><신 설></u>	<u>바. 안전관리형 과제의 경우 안전 전문가 1명 이상</u> 2. ~ 7.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20조(민간의 투자유치가 있는 사업의 투자심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1. ----- ----- <u>산업통상부장관</u> ----- ----- ----- ----- 가. ~ 바. (현행과 같음) 2.·3.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28조(협약의 준비) ① ~ ⑩ (현행과 같음) <u>⑪ 혁신도전형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기관은 기술적 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u>

현행	개정안
제33조(협약의 해약) ① (생략)	는 혁신도전 연구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기술목표 및 예상 기술난제 2. 기술난제 발생 시 대응전략 또는 대체 목표 3. 연구목표 달성 실패시 원인분석 및 후속조치 계획
② 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 또는 특별평가 결과가 “중단(성실, 불성실)”으로 확정된 연구개발과제는 평가결과의 통보로써 협약 해약의 통지를 갈음한다.	제33조(협약의 해약) ① (현행과 같음) ② ----- ----- “중단(성실)”, “미완료”로 ----- ----- -----.
제36조(진도점검) ① ~ ⑧ (생략)	제36조(진도점검) ① ~ ⑧ (현행과 같음)
<신설>	⑨ 혁신도전형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제28조제11항에 따른 혁신도전 연구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기술난제 발생 시 연구목표·내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38조(단계평가) ① ~ ⑨ (생략)	제38조(단계평가)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단계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⑩ ----- -----.

현행	개정안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중단(불성실) : 단계보고서 미제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연구개발성과가 그 수행계획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경우, 연구개발비의 관리가 불성실한 경우,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의무사항·시행조치 불이행의 경우 등	3. 미완료 : ----- ----- ----- ----- ----- ----- ----- ----- ----- ----- -----
4. 조기종료(우수) : 연구개발계획서서상의 최종목표를 달성하였으며, 기술적 성취도와 사업화 가능성 측면에서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	4. 완료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최종목표를 달성하였거나, 해당단계 목표를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수행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
5. 조기종료(보통)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최종목표를 달성하였거나, 해당단계 목표를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수행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	5. <삭제>
⑪ (생략)	⑪ (현행과 같음)
⑫ 단계보고서에 대한 평가결과가 “중단(성실, 불성실)”, “조기종료(우수, 보통)”인 경우는 차기단계 연구개발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⑫ ----- “중단(성실)”, “완료”----- ----- ----- ----- ----- -----
⑬ ~ ⑯ (생략)	⑬ ~ ⑯ (현행과 같음)
⑰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⑰ -----

현행	개정안
평가단으로 하여금 중단(성실) 또는 <u>중단(불성실)</u> 등으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사안에 따라 공통운영요령 제44조의 제재대상, 제재범위 및 연구개발비 환수 등을 구분하게 하고, 기술개발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와 귀책사유에 대한 의견 및 제재·환수 관련 규정에 의거한 조치 사항의 범위를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공통운영요령 제45조의 제재처분평가단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⑮ ~ ⑳ (생략) ㉑ 제10항 및 제11항의 단계평가 결과 중 “<u>조기종료(우수, 보통)</u>”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는 다음의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 3. (생략) ㉒ (생략) ㉓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최종목표를 조기에 달성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후속연구개발 계획을 전문기관에 제출하고,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그 필요성 및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계속”이나 “조기	----- <u>미완료</u> ----- ----- ----- ----- ----- ----- ----- ----- ----- ----- ----- ----- ----- ----- ⑮ ~ ㉑ (현행과 같음) ㉑ ----- ---- “<u>완료</u>”----- ----- ----- 1. ~ 3. (현행과 같음) ㉒ (현행과 같음) ㉓ ----- ----- ----- ----- ----- ----- ----- “완

현행	개정안
종료”로 판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가 “계속”으로 확정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제출한 계획에 따라 후속연구를 수행한다. <신 설>	료”로 ----- ----- ----- ----- ----- -----. ②4 혁신도전형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제28조제11항에 따른 혁신도전 연구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기술난제 발생 시 연구목표·내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39조(최종평가) ① ~ ⑥ (생략) ⑦ 연구개발과제별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로 하며 최종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우수 : 최종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로서, 성실하게 수행하여 연구성과가 혁신적이고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 2. 보통 : 최종평가 결과 70점 이상 85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로서, 연구개발 과정이 성실하고 연구성	제39조(최종평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 -----. 1. 완료 : 최종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로서, 성실하게 수행하여 미완료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삭제>

현행	개정안
<u>과와 사업화 가능성이 양호한 경우 등</u> <u>3. 미흡 : 최종평가 결과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과제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계획된 최종 개발 목표를 미달성하고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낮은 경우 등</u> <u>4. 불성실수행 : 최종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연구개발성과가 그 수행계획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경우, 연구개발비 관리가 불성실한 경우,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의무사항(최종보고서 미제출 등)·시행조치 불이행의 경우 등</u> <u>⑧ 초고난도 과제 및 혁신도전형 과제의 최종평가 시 전문기관의 장은 목표 달성 여부 및 정도에 따른 등급 부여를 하지 아니하고 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산업적 파급력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 결과를 공개 행사에서 발표하게 하는 것으로 평가를 갈음할 수 있다.</u> <u>⑨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u>	<u>3. <삭제></u> <u>4. <삭제></u> <u>⑧ 초고난도 과제, 혁신도전형 ----- 스타 엔지니어 트랙 해당과제-----</u> ----- ----- ----- ----- ----- -----. <u>⑨ -----</u>

현행	개정안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제47조(행정행위 등) ① “중단(불성실)”, “불성실수행” 등에 따른 환수 대상액 및 정산 잔액, 정부납부기술료에 대한 납부를 계속 불응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타 정책자금의 지원 제한, 해당기관의 공개 및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7조(행정행위 등) ① “미완료” ---- ----- ----- ----- ----- ----- ----- -----.
제48조(사업의 홍보)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동 사업으로 개발 중이거나 개발한 내용을 외부에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u>산업통상자원부</u> 지원 사업으로 수행한 것임을 밝혀야 하며, 특히, 논문 발표 시 부처명(<u>산업통상자원부</u>) 및 연구개발과제명(연구개발과제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8조(사업의 홍보) ① ----- ----- ----- ----- <u>산업통상부</u> 지원 ----- ----- -----(<u>산업통상부</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51조(재검토기한)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1조(재검토기한) <u>산업통상부장관</u> ----- ----- ----- ----- -----.

[별표 1] 추진절차(제4조 관련)
(변경 전)

가. 지정공모의 경우

① 단기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연구개발비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1) : 분기·반기별 연구개발비 상시점검

2) :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대상연구개발기관에 한함

② 중장기연구개발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추진방향 설정	산업통상자원부(전략기획단)
산업기술 R&D 전략	전략기획단
기술수요조사	전문기관
기획대상연구개발과제 발굴	MD/연구개발과제기획단/PD
기획대상연구개발과제 확정	전략기획단
연구개발과제기획 수행 (기술/시장 및 특허·표준분석)	MD/연구개발과제기획단/PD
기획연구개발과제의 최종 검증	연구개발과제기획단/연구개발과제기획검증단
신규지원대상연구개발과제 및 예산(안) 심의·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
사전검토	전문기관
사전 서면검토	전문기관(평가단)
신청과제 평가	전문기관(평가단)
지원대상연구개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문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진도점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상시점검 ¹⁾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단계 평가 ²⁾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정산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진도점검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최종 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정산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 ³⁾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연구개발비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1) : 분기·반기별 연구개발비 상시점검

2) : 단계구분 연구개발과제에 해당

3) :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대상연구개발기관에 한함

③ 대형선도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추진방향 설정	산업통상자원부(전략기획단)
대형선도과제 후보 도출	산업통상자원부(MD, PD)
대형선도과제 후보 확정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연구개발과제 기획 수행(기술, 시장, 특허, 표준 분석)	산업통상자원부(MD, PD)
대형선도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전략기획단)
신규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1단계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
1단계 사업수행자 선정	전문기관(평가단) → 산업통상자원부
1단계 협약 및 연구개발과제기획수행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1단계 결과평가 및 2단계 사업수행자 선정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2단계 협약 및 사업수행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진도점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2단계 결과평가 및 3단계 사업수행자 선정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3단계 협약 및 사업수행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진도점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정산	주관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 ¹⁾	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연구개발비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1) :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대상 연구개발기관에 한함

나. 자유공모의 경우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개념평가	전문기관(평가단)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
사전검토	전문기관
사전 서면검토	전문기관(평가단)
신청과제 평가	전문기관(평가단)
지원대상연구개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문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진도점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상시점검 ¹⁾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단계 평가 ²⁾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정산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진도점검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최종 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정산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 ³⁾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연구개발비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1) : 분기·반기별 연구개발비 상시점검

2) : 단계구분 연구개발과제에 해당

3) :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대상연구개발기관에 한함

다. 품목지정 공모의 경우

해당 연도 추진방향 설정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수요조사	전문기관
후보품목 발굴	MD/연구개발과제기획단/PD
후보품목에 대한 의견수렴 (인터넷 공시 등)	전문기관
지원 품목 및 예산(안) 심의·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개념평가	전문기관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
사전검토	전문기관
사전 서면검토	전문기관(평가단)
신청과제 평가	전문기관(평가단)
지원대상연구개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문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진도점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상시점검 ¹⁾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단계 평가 ²⁾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정산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진도점검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최종 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정산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 ³⁾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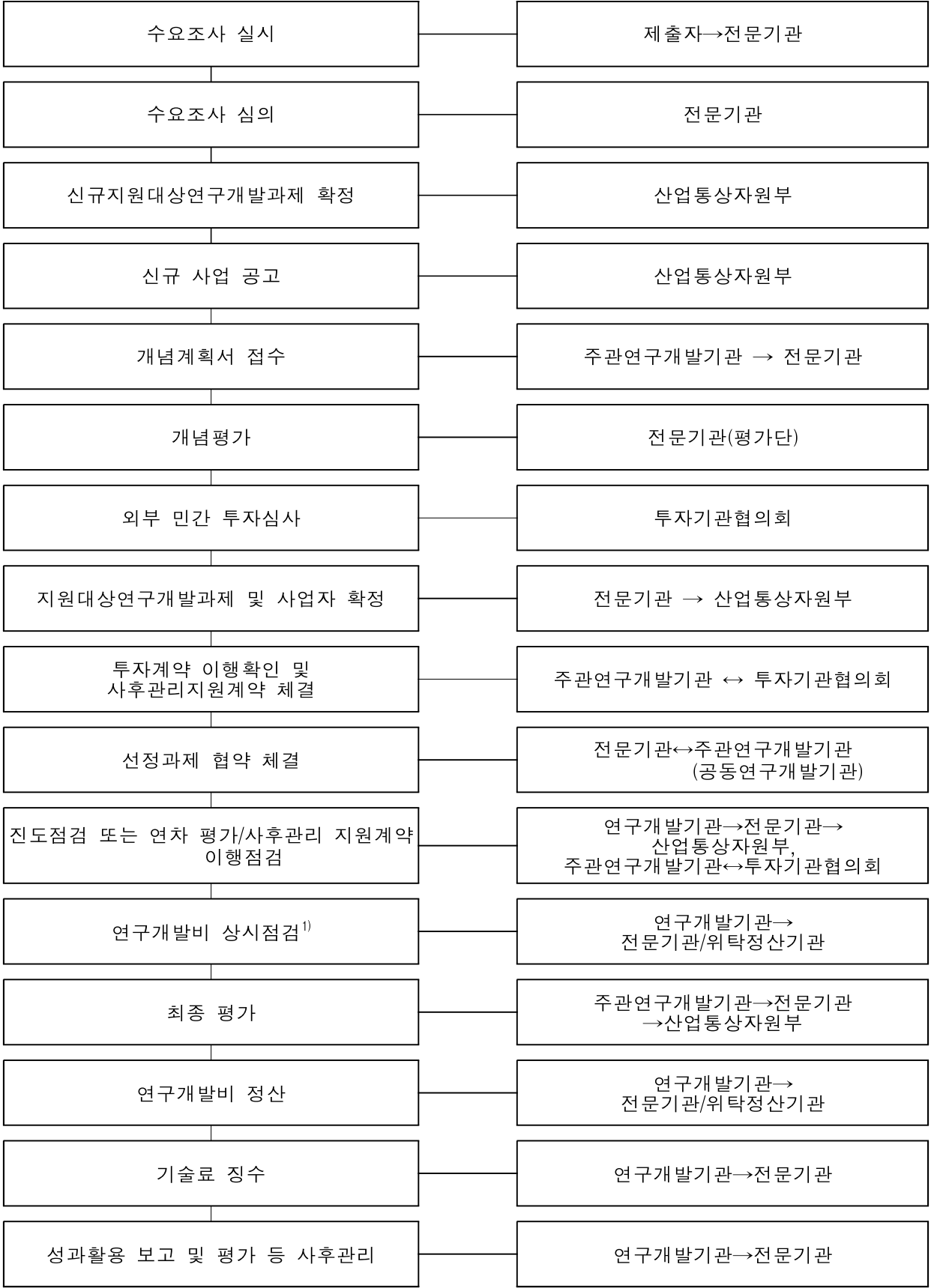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연구개발비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1) : 분기·반기별 연구개발비 상시점검

2) : 단계구분 연구개발과제에 해당

3) :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대상연구개발기관에 한함

라. 투자심사가 있는 경우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연구개발비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별표 1] 추진절차(제4조 관련)
(변경 후)

가. 지정공모의 경우

① 단기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연구개발비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1) : 분기·반기별 연구개발비 상시점검

2) :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대상연구개발기관에 한함

② 중장기연구개발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추진방향 설정	산업통상부(전략기획단)
산업기술 R&D 전략	전략기획단
기술수요조사	전문기관
기획대상연구개발과제 발굴	MD/연구개발과제기획단/PD
기획대상연구개발과제 확정	전략기획단
연구개발과제기획 수행 (기술/시장 및 특허·표준분석)	MD/연구개발과제기획단/PD
기획연구개발과제의 최종 검증	연구개발과제기획단/연구개발과제기획검증단
신규지원대상연구개발과제 및 예산(안) 심의·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부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
사전검토	전문기관
사전 서면검토	전문기관(평가단)
신청과제 평가	전문기관(평가단)
지원대상연구개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문기관 → 산업통상부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진도점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부
연구개발비 상시점검 ¹⁾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단계 평가 ²⁾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부
연구개발비 정산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진도점검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최종 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부
연구개발비 정산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 ³⁾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연구개발비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1) : 분기·반기별 연구개발비 상시점검

2) : 단계구분 연구개발과제에 해당

3) :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대상연구개발기관에 한함

나. 자유공모의 경우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부
개념평가	전문기관(평가단)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
사전검토	전문기관
사전 서면검토	전문기관(평가단)
신청과제 평가	전문기관(평가단)
지원대상연구개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문기관 → 산업통상부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진도점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부
연구개발비 상시점검 ¹⁾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부
단계 평가 ²⁾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부
연구개발비 정산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진도점검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최종 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부
연구개발비 정산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 ³⁾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연구개발비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1) : 분기·반기별 연구개발비 상시점검

2) : 단계구분 연구개발과제에 해당

3) :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대상연구개발기관에 한함

다. 품목지정 공모의 경우

해당 연도 추진방향 설정	산업통상부
기술수요조사	전문기관
후보품목 발굴	MD/연구개발과제기획단/PD
후보품목에 대한 의견수렴 (인터넷 공시 등)	전문기관
지원 품목 및 예산(안) 심의·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부
개념평가	전문기관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
사전검토	전문기관
사전 서면검토	전문기관(평가단)
신청과제 평가	전문기관(평가단)
지원대상연구개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문기관 → 산업통상부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진도점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부
연구개발비 상시점검 ¹⁾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부
단계 평가 ²⁾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부
연구개발비 정산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진도점검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최종 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부
연구개발비 정산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 ³⁾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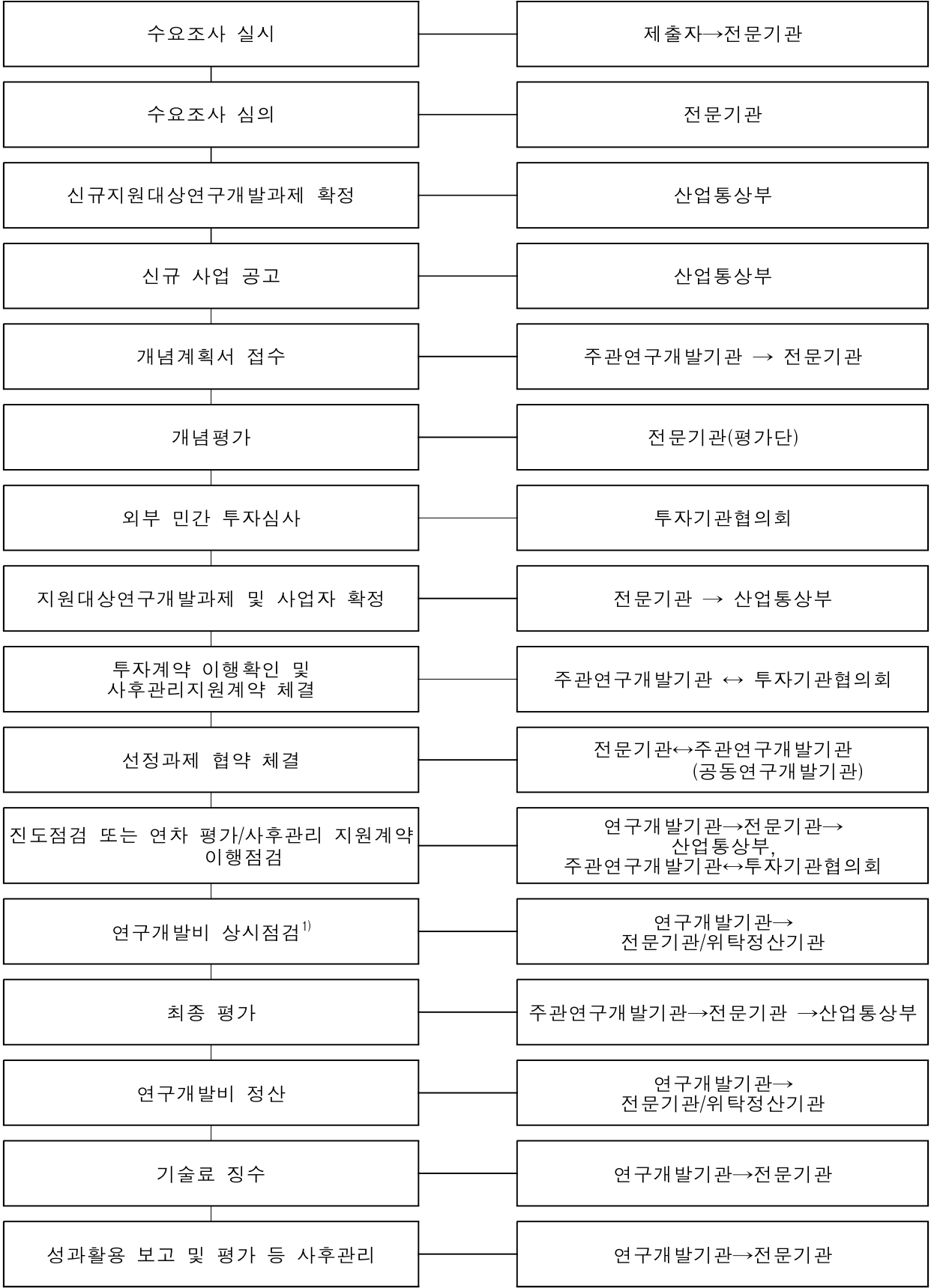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연구개발비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1) : 분기·반기별 연구개발비 상시점검

2) : 단계구분 연구개발과제에 해당

3) :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대상연구개발기관에 한함

라. 투자심사가 있는 경우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연구개발비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마. 대형선도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추진방향 설정	산업통상부(전략기획단)
대형선도과제 후보 도출	산업통상부(MD, PD)
대형선도과제 후보 확정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연구개발과제 기획 수행(기술, 시장, 특허, 표준 분석)	산업통상부(MD, PD)
대형선도과제 선정	산업통상부(전략기획단)
신규사업공고	산업통상부
1단계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
1단계 사업수행자 선정	전문기관(평가단) → 산업통상부
1단계 협약 및 연구개발과제기획수행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1단계 결과평가 및 2단계 사업수행자 선정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부
2단계 협약 및 사업수행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진도점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부
2단계 결과평가 및 3단계 사업수행자 선정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부
3단계 협약 및 사업수행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진도점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부
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부
연구개발비 정산	주관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 ¹⁾	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연구개발비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1) :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대상 연구개발기관에 한함

[별표 2]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제17조제1항 관련)
(변경 전)

1. 제출서류 검토

-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한다.
-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신청자격 검토

①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할 수 있다.
 - 지정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때
 - 품목지정 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공고된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때
 - 자유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② 기개발·기지원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 연구개발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로 할 수 있다.
- 연구주제가 유사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비공개 과제로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검토를 실시한다.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그 차별성 여부를 판단한다.
- 이미 지원되었던 연구개발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

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제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제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연구개발과제로 처리한다.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검토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1. 최근 회계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 회계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감사의견이 "한정"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 자본전액잠식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자본으로 계산 가능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조치	○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 선정평가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 연구개발기관이 "사후관리대상"일 경우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해당 과제에 대한 진도점검 등을 실시 - 진도점검 등 결과 "연구개발비 부정 집행 또는 기업 부실"이 의심되는 경우 특별평가 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속지원여부를 결정 ○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된 기관이 연차별 연구개발비 지급 시점에 사후관리 대상조건 1개 이하인 경우 사후관리대상 해제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⑥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연구개발과제 수행

총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를 포함하되, 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연구개발과제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총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에는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나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한다.

⑦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초과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한계기업)	연구개발과제 수
중견기업	4개까지 수행 가능
중소기업	2개까지 수행 가능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한다.

⑧ <삭제>

- ⑨ 기타 공고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연구개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⑩ 각 사전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선정평가일의 3영업일 전 18:00까지 공문으로 관련서식을 제출하여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변경할 수 없다.

[별표 2]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제17조제1항 관련)
(변경 후)

1. 제출서류 검토

-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한다.
-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신청자격 검토

①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할 수 있다.
 - 지정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때
 - 품목지정 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공고된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때
 - 자유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② 기개발·기지원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 연구개발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로 할 수 있다.
- 연구주제가 유사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비공개 과제로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검토를 실시한다.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그 차별성 여부를 판단한다.
- 이미 지원되었던 연구개발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성실)”이나 “미완료”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

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제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1호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을 발행한 상장법인은 적용 제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연구개발과제로 처리한다.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검토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여성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같은 조 제14호의4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회계상 부채로 인식하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1. 최근 회계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 회계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말 감사의견이 "한정"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투자를 받은 경우, 해당 투자금액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 자본전액잠식 계산 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같은 조 제14호의4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회계상 부채로 인식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투자를 받은 경우, 해당 투자금액은 자본으로 계산 가능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조치	○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 선정평가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 연구개발기관이 “사후관리대상”일 경우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해당과제에 대한 진도점검 등을 실시 - 진도점검 등 결과 “연구개발비 부정 집행 또는 기업 부실”이 의심되는 경우 특별평가 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속지원여부를 결정 ○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된 기관이 연차별 연구개발비 지급 시점에 사후관리 대상조건 1개 이하인 경우 사후관리대상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해제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⑥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연구개발과제 수행 총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를 포함하되, 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연구개발과제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총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에는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나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한다.

⑦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초과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한계기업)	연구개발과제 수
중견기업	4개까지 수행 가능
중소기업	2개까지 수행 가능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한다.

⑧ <삭제>

- ⑨ 기타 공고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연구개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⑩ 각 사전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선정평가일의 3영업일 전 18:00까지 공문으로 관련서식을 제출하여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변경할 수 없다.